

손해사정 수수료 지급기준

1 재물(1종·해상·항공)보험

1. 목 적

-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재물(제1·2종) 손해사정 위임업무 대한 수수료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부위탁

-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서 정한 손해사정업무 일부만을 지정,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이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일괄위탁시 적용 수수료

- 보험종목이나 담보위험의 종류 또는 보험사고 일체에 관한 손해사정 업무를 특정 선임손해사정사에게 일괄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의하여 이 기준에 정한 수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수수료의 추가 지급

-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위임 시 또는 위임처리 업무 종결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타사 중복보험 시 적용

- 1사고 1물건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자가 관련되어 각 보험자가 공동으로 1선임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수수료 금액을 각 보험사가 비례하여 분담한다.

6. 수수료의 지급기준

-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선임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별지.1~별지.5 및 별지.8 및 별지.9 중 해당 보험종목 별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표”와 “별지.6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별지.7 서면심사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기 산정한 금액에 당해 사고의 특성상 관계 전문인의 활용 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요실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대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 “별지.1 ~ 별지.9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위탁자", "수탁자"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 수수료의 감액 및 부지급

- "수탁자"가 손해사정업무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대외기관에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위탁자"는 보험종목별 각각의 “손해사정 수수료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산정된 보수의 50%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사실, 보험가액, 손해액 등 손해사정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통상적인 손해사정 절차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업무수행 시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수수료의 지급시기

- "위탁자"은 "수탁자"의 최종 손해사정보고서 및 손해사정 수수료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사정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서류미비, 보고서 수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최종 손해사정 보고서의 보완 필요 등 위임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수수료의 청구

- “수탁자”는 계산서를 스마트빌에서 발행하여 “위탁자”의 아래의 웹메일로 수수료를 청구한다.

부 서	업 무	웹메일주소
심사지원팀	재물·인보험	nhfire8194-1@nonghyup.com
정책보험지급팀	가축·농기계 등	
농업보험지급심사팀	농작물재해보험	nhfire8162-1@nonghyup.com

1. 수수료 지급기준

구분	조사기준		기본보수	일당	비고
장기 인보험	현장조사	일반조사	30만 원	3만 원	1건당
		단순조사	13만 원	-	1건당

- 동일사고, 동일증권 또는 다수증권 동시 청구는 담보 구분없이 1건으로 취급
- 단순조사란 서류 발급 등 조사가 불필요하거나 손해발생 확인, 약관 및 관계 법규 판단건을 말함
- 단순조사로 위임했으나 조사 진행시 난이도에 따라 일반조사로 변경 가능

2. 기타 제증명료 비용 등

- 증빙 영수증이 있는 경우 실비를 지급
- 영문보고서의 경우 1보고서당 100,000원을 기본 비용에 가산하여 지급

3. 심층 및 특정조사 지급기준

- 심층조사건 : 적절한 조사의 결과물 제출 시 심사금액 × 110% 한도 지급
- 특정조사(보험사가·TF 등)건은 심사지원팀과 협의 후 진행
- ※ 1. 기준표에 의한 금액과 중복지급 불가

4.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1종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별지 : 1. 재물(1종)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1부
2. 재물(2종_선박·항공))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1부
3.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시설제외) 1부
4.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시설) 1부
5. 농작물재해보험 인수점검 및 인수지원서비스 수수료 기준 1부
6.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1부
7. 서면심사 수수료 지급기준 1부
8. 농기계종합보험(자기신체사고 및 담보별 경합시)수수료 기준 1부
9. 풍수해보험 수수료 기준 1부

※ 위 별지는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 제23조(특약사항)에 따라 제공됩니다.

【별지 6】

여비 · 교통비 지급기준(공통)

1.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일비	평일	30,000원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60,000원
교통비	항공임	실비(2등석Economy)
	철도임	실비(KTX특실 제외)
	선(여객선)임	실비(1등정액)
	고속·시외버스	실비
	택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2회)
	업무용 승용차	유류비 및 통행료 실비
숙박비		50,000원
중식비		9,000원

2. 적용기준

- 가. 대한민국내 손해사정법인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 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나. 교통비 및 숙박비는 통행료 영수증 등 기타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 다. 업무용 승용차 이용 시 유류비 기준

구분	산식	비고
일반장기정책	주행거리 × IL당 요금 ÷ 평균연비	
농작물	(주행거리 × IL당 요금 ÷ 평균연비) × 1.1	농작물특성반영

- 거리기준 : 출발지와 출장지간의 실제 이동거리
- 한국도로공사, 다음, 네이버 길찾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첨부
- IL당 요금 : www. opinet.co.kr (출장 시작일 기준 주간 평균 유가)
- 평균연비

휘발유	경유	LPG
13.30	14.30	9.77

※ 신재생에너지(전기, 수소 등) 차량은 LPG차량 준용
 ※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준연비 : 전기연료 외 주사용 연료기준

- 라. 중식비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시설 외) 일반조사 시에만 적용하며, 1일 2농지 이상 조사한 경우 지급한다.

【별지 1】

재물(1종)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

1. 손해사정 보수표

손해사정금액	요율(%)	(최저)기준액(원)
3백만 원 미만 및 면책건	기본료	520,000
3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		600,000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680,000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5.20	680,000
2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4.27	1,040,000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3.80	1,280,000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2.89	1,900,000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20	2,892,000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1.95	4,400,000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1.61	5,850,000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27	8,050,000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0.89	12,700,000
2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0.82	17,800,000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0.73	24,600,000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36,500,000 + 50억 원 초과금액 × 0.4% 가산	
100억 원 초과	56,500,000 + 100억 원 초과금액 × 0.2% 가산	

2. 수수료 기준

- 가. 화재, 폭발, 풍수재 등 재물 전손사고의 기본 보수는 상호합의에 의해 손해액 확정금액의 50%(다만, 농기계(자차)인 경우에는 손해액 확정금액의 40%로 하며 항공방제기는 제외한다.)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손 사고라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대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액확정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여 상기 수수료 기준표의 요율을 적용한다.**
(단, 구내치료비는 제외 한다.)
다만, 손해사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율 5백만 원이상~10백만원미만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 다. 이 수수료 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 손해사정금액 10백만 원 이상 건 중 산출된 수수료가 구간별 기준액(기본료) 보다 적을 경우 구간별 기준액을 적용한다.
- 라. 가축재해보험은 아래 손해액기준표를 적용 하며, 축산휴지보험특약의 경우 손해액의 30%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한다.

※ 손해액 기준

구분	3억 미만	3억이상 10억미만	10억 이상
가축재해보험	75%	70%	65%
축사특약	85%	80%	75%

다만, 폭염사고건에 한해서는 현장조사 3회 이상시 손해액의 100% 상당액 (축산휴지보험특약의 경우 손해액의 30%)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하며, 폭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 수수료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아 래]

NO	폭염기간	할증 수수료
1	10일 미만	3회 이상 현장조사시 손해사정 수수료의 100%
2	10일 이상	4회 이상 현장조사시 손해사정 수수료의 110%
3	15일 이상	5회 이상 방문시 손해사정수수료의 115%
4	20일 이상	6회 이상 방문시 손해사정수수료의 120%

마. 농기계종합보험 자기차량의 사고는 손해액의 70%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한다.

바. 농기계종합보험 항공방제기(무인헬기)는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금액으로 적용한다.

[아래]

구분	내용
보수기준	시간당 50,000원(이동시간 포함) ※ 조사자 경력별 적용 없음
교통비 및 숙박비	[별지6]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준용

사.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손해액확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아. 이 수수료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에 의해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자.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 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 “위탁자”는 손해조사 위임 시 조사대상 물건(또는 내용)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집단사고 수수료 기준

○ 피해자 또는 피해세대수가 10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

구분	할증율	비고
10 ~ 30인 미만	손해사정 수수료의 1.2배	-
30 ~ 200인 미만	손해사정 수수료의 1.5배	-
200인 이상	손해사정 수수료의 2배	-

주) 아파트 낙뢰사고 제외

4. 단순사고 수수료 기준

○ 적용대상 및 수수료 기준

대상건	기준액
• 가계성 도난사고	50만 원
• 홀인원보험, 골프용품손해사고	50만 원
• 가축재해보험 "말"보험	66만 원
• 가축재해보험 "소"보험	10만 원
• 농기계종합보험 (드론)	50만 원
• 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I 「부상」	50만 원
• 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I 「후유장해, 사망」	66만 원
• 자기신체사고II는 [별지.8] 수수료 기준 적용	
• 농기계보험 간편 조사 건	5.6만 원
• 가축재해보험“소”보험 간편 조사 건	3.5만 원

주) 풍수해보험은 별도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5. 신종보험 수수료 기준

가. 대상 : 재물, 금융보험(BBB, 전자금융배상책임), 신원보증보험 등 “수탁자”가 신종보험 수수료 적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나. 수수료 산정 (Time base)

- 조사자 경력별 적용

조사자 경력	시간당 수수료
5년 미만	50,000원
10년 미만	70,000원
10년 이상	90,000원

- 수수료 산정 내역서를 제출한다.
- 수수료 산정의 시간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건의 난이도, 노력도, 성과에 따라 해당 “시간당 수수료기준”의 차상위 또는 차하위를 적용할 수 있다.
- 조사경력은 해당 보종의 업무처리 경력기준으로 한다.
- 일당은 별도 지급한다.
- 보수 5백만 원 초과 시 보험자와 별도 협의 후 산정한다.

6. 보험사기 조사건 성과급

○ 대상 및 지급기준

구분	대상	지급기준
우수조사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위장사고, Moral 사고 입증 (단, 청구포기 징구 및 객관적인 조사과정 결과 근거로 함)	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지급보험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 단, 가축재해보험의 소축종은 건당 30만 원으로 한다.
보험사기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입건, 구속, 기소되어 형사판결 또는 민사판결로 보험사기 확정된 건	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지급보험금의 10~20배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

7. 가축재해보험 기타비용 지급

- 가축 돼지·가금 농장 현장조사시 1회당 방역복, 세차비 등 위생비용에 소요되는 1인당 2만 원의 비용을 지급한다.

【별지 8】

농기계종합보험(자기신체사고 및 담보별 경합시) 수수료 기준

1. 자기신체사고 수수료 지급기준

업무 구분	수수료 기준액
자기신체사고 I (부상)	500,000원
자기신체사고 I (후유장해·사망)	660,000원
자기신체사고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8급 ~ 14급) : 500,000원 ● 부상(1급 ~ 7급) : 660,000원 ● 후유장해·사망인 경우 가입금액 한도(최대1억원)내 기준

2. 담보별 경합 시 수수료 기준

No	업무 구분	수수료 기준액
1	농기계손해 + 자기신체사고 I(부상 8급~14급)	농기계손해 수수료만 인정
2	농기계손해 + 자기신체사고 I(부상 1급~7급)	농기계손해 수수료 + 자기신체사고 I 부상수수료 각각 지급
3	농기계손해 + 자기신체사고 I(후유장해, 사망)	농기계손해 수수료 + 자기신체사고 I(장해,사망)수수료 각각 지급
4	농기계손해 + 자기신체사고 I(공제금 있는 사고) (상해급수 무관)	농기계손해 수수료 + 자기신체사고 I(장해,사망)수수료 각각 지급
5	농기계손해 + 자기신체사고II	농기계손해 수수료+ 자기신체사고II수수료 각각 지급 (단, 부상급수 8급 ~ 14급은 제외)
6	농기계손해 + 대인배상	농기계손해 수수료 + 대인배상 수수료 각각 지급
7	대물배상 + 대인배상	대물배상수수료 + 대인배상수수료 각각 지급 (단, 타보험사 선 처리건 구상처리 시 대물 : 50만원, 대인 : 50만원)
8	농기계손해 + 대물배상	농기계손해액 + 대물손해액 후 농기계손해 수수료로 지급
9	농기계손해 + 자기신체사고 I(부상1~14급) + 대인배상	농기계손해 수수료 + 대인배상수수료만 각각 지급
10	농기계손해 + 자기신체사고 I(후유장해·사망) + 대인배상	농기계손해 수수료 + 대인배상수수료만 각각 지급
11	농기계손해 + 자기신체사고II + 대인배상	농기계손해 수수료 + 자기신체II > 대인 ⇨ 자기신체II 수수료지급 자기신체II < 대인 ⇨ 대인배상 수수료지급
12	위 업무구분과 대물배상이 추가로 경합하는 경우	No.8 과 같이 대물손해액을 농기계손해액에 포함시 킨 금액의 수수료를 인정 No.7 과 농기계손해 추가 경합시에도 동일